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박순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71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4월 01일
발 의 자 :박순규 의원(1명)
찬 성 자 :김기덕, 김재형, 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 박기재, 박상구, 성흠제, 송명화, 송아량, 양민규, 이영실, 임종국, 장상기, 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 최정순, 황규복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이 운영·관리하는 배움관(본관)의 연면적은 5,584㎡이고 창의관(별관)은 4,266㎡, 다솜관(생활관)은 6,408㎡, 어린이집은 399㎡임. 이중 노후로 인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다솜관을 제외하고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'「시설물안전법」')제1종, 제2종, 제3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.

○ 「시설물안전법」 1~3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법령에 의해 안전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은 사용중지 등의 관련 근거가 부족하므로,

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 시 시민과 사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6조제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안전상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용허가의 취소)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제6조(사용허가의 취소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안전상의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